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양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87
----------	-----

발의년월일 : 2016년 2월 5일

발 의 자 : 박양숙, 김선갑, 김영한,
이정훈, 김기대, 김동을,
박운기, 권미경, 유 용,
김현아, 김광수(도봉),
김창원, 김진철, 김혜련,
이신혜, 강성언, 서영진,
김생환, 문상모, 김종욱,
신원철, 한명희, 오승록,
김정태, 김인제, 최영수,
조규영 의원(27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8조에서는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와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중도매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비율을 1천분의 200의 범위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중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20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의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를 “출하자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중도매인에게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200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③(생략)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 ----- 출하자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중도매인에게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200의 범위에서 -----. ②~③(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개정안은 중도매인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의 비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은 서울시에 대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 성 자

대표 발의자 : 박 양 숙 의원